

**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<제206회 임시회>

2012. 3. 9.

**달 성 군 의 회
전문위원 신 후 남**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I. 개요

1. 제출일 : 2012년 2월 29일

2. 제출자 : 달성군수(행정지원과)

3. 개정이유

- 기존의 달성군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, 인사위원회는 민간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잦은 공적심사에 비해 위원회 소집의 어려움이 있음.
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심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공적심사위원회의 변경

- 인사위원회 ⇒ 군정조정위원회(포상업무담당 부서장 포함)

나. 기타 관련 용어 정비

5. 관계법령

- 「상훈법 시행령」
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

II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,

-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이나 군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.
-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공무원 4명,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인사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사전에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출석에 어려움이 없지만, 포상은 정기포상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포상도 있어 위원회의 소집에 어려움이 따르며, 소집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선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덧붙여 공적조서에 산하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의 확인이 있어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여도 포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1) 조례안 1부.
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- 3) 관계법령 1부.

붙임 1)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각 호 부문 외의 “각 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”을 “제5조와 제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) ①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사항 등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(이하, ‘위원회’라 한다.)에서 대행하며, 포상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.

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불임 2

신·구조문 대비표

붙임 3)

관계 법령

[상훈법 시행령]

제2조(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)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1970.6.13>

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1970.6.13, 2005.11.4>

③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서식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 <신설 1970.6.13, 1984.1.23, 2000.1.28, 2008.2.22, 2008.2.29>

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1970.6.13, 2000.1.28>

⑤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대상자의 범죄경력,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08.2.22, 2008.2.29>

[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]

제23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종류별로 각종 포상의 전문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·운영하며, 당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을 시상한 다음 날에 해산한다. 다만,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적내용을 심사·평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